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2.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문의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은 재허가 시한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방송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허가 등 처분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인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법」상 관계규정과 함께 고려할 때, 재허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무허가 방송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허가 유효기간 등의 연장을 통해 이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법 제18조제5항에서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허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방송사업자들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과 시청자 피해 방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허가도 필요하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함.
- 또한, 개정안의 ‘내부 사정’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수범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언 정리가 필요해 보임.

- 방미통위와 한국방송협회·JTBC·MBN·YTN·연합뉴스TV 등 방송
사업자들은 개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현의원, 이정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